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2. 14 선고 2020가단765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최영남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명호

변 론 종 결 2023. 10. 5.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D 사이에 2020. 2. 20.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C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와 2020. 3. 20. 접수 제11583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C는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그 상호가 2014. 1. 9. 'F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E'이라 한다)는 D, G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차13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3. 2. 12. 'D, G는 연대하여 E에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3. 3. 12. 확정되었다.

나. E은 2020. 5. 하순경1)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 및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E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20. 6. 9. D, G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20. 6. 10. D, G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2020. 2. 20. 피고 C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0,8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 C는 2020. 3. 20.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각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D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인데,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 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와 D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D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원상회복으로 피고 C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D는 아들인 피고 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와 D 사이의 위 명의신탁관계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나, 명의신탁자인 D와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 C는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D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로서 D를 대위하여 피고 C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소송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항변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매매계약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여부는 채권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매매계약 당사자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749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E의 대표를 소개받았을 뿐 기존에 원고와 E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대가로 E에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1,000만 원이 실제 이 사건 채권양도의 대가로 E에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③ 원고는 2020. 4. 29.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본 직후 2022. 5. 하순경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변제독촉 등 채권회수절차 없이 2020. 6. 9. 곧바로 채권양도 통지와 함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④ E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그 재산에 다수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있는 등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압류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은 주로 원고 명의로 피고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현정

별지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20. 5.로 되어 있고, 원고가 2020. 5. 22.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E이 2020. 5. 13.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다.